

	<p>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 이하 같다)에 보수계다. 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운용보수율: 연 1,000 1,000분의 3.3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율: 연 1,000분의 1.01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 1,000분의 0.3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 1,000분의 0.3 ⑤ 생 략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 자신 보유 등의 사유로 인의 사유로 인한 주적오차 탁분 한 주적오차율의 최소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배금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의 자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에 따라 투자신탁분배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영업일전까지 투자신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 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공시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 시장에 공시하여야 한 다.</p> <p>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월, 10월 마지막 일 및 회 일 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2. ~ 4. 생 략 2. ~ 4. 생 략 ② ~ ③ 생 략 ② ~ ③ 생 략</p> <p>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 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이브리드 하나에 해당하는 이 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0”보다 적은 이익금이 “0”보다 적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 은 경우에도 분배를다. 유보한다.</p> <p>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가 지수 구성종목을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편입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는 이익 계산되는 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한 집합투자재산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의 평가이익</p>
제41 조(투자자신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 자신 보유 등의 사유로 인의 사유로 인한 주적오차 탁분 한 주적오차율의 최소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배금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의 자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에 따라 투자신탁분배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영업일전까지 투자신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 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공시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 시장에 공시하여야 한 다.</p> <p>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월, 10월 마지막 일 및 회 일 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2. ~ 4. 생 략 2. ~ 4. 생 략 ② ~ ③ 생 략 ② ~ ③ 생 략</p> <p>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 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이브리드 하나에 해당하는 이 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0”보다 적은 이익금이 “0”보다 적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 은 경우에도 분배를다. 유보한다.</p> <p>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가 지수 구성종목을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편입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는 이익 계산되는 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한 집합투자재산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의 평가이익</p>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회계 감사인명	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변경일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1,650,000 원	서면계약	-	-	-	-	-	-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형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